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안)

2024. 7. 9.

교 육 부
(글로벌정책기획관)

I 개정 사유

-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

“초·중·고 규제 개선 방안(총리실, '23)” : <과제명>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제 완화

- (요청)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제의 적극적인 완화 필요
 - 외국인학교의 신설 또는 이전 시 설립주체의 소유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도 외국인학교 설립·이전이 가능하도록 교지 및 교사의 임차 범위 확대 필요

- 교지 등의 임차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학습권 등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 외국인학교 소재 9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긍정의견(8개), 현행유지(1개)

- 외국인학교의 학생모집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로 해석 혼란의 여지를 배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1.2.22.)

-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960여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II 주요 내용

□ 교지 또는 시설물의 임차 범위 확대

- 교지 또는 시설물의 임차 허용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까지 확대(제4조제2항 개정)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



확대」 현행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u>지방자치단체</u>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1. 교지 2.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 나. (생략)	제4조(설립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지방자치단체</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외국정부-----. 1. ~ 3. (현행과 같음)

-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임차 허용범위 확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 유사사례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나, (중략) 건물·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예: 서울시교육청 10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기준) (신설)		제4조(설립기준)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

- 내국인학생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일반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개정)
- (1차 모집정지 처분 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모집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가.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입학시킨 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입학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를 한다. 다만,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를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만을 할 수 있다.	가. ----- ----- ----- ----- ----- ----- ----- ----- ----- 내용이 경미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모집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

- (가중처분 적용기간)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3년간*으로 정하고,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일**로 함

* 유사사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①위반행위일, ②적발일, ③행정처분일이 있음.
③행정처분일은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 ①위반행위일은 적발이 장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②적발일로 하는 것이 적절(법제처 「법안 입안·심사 기준」 요약)

현 행	개 정 안
(신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현행	개정안
나. 위반횟수는 해당 외국인학교가 부정 입학행위를 한 누적 횟수를 말하고,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행위에 대해서 이 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부정입학행위(행정처분 후의 부정입학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삭제)

- (차수 적용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규정 신설

(예시)

적용 차수 :		1차 처분		2차 처분		1차 처분		3차 처분
적발 시점 :		2회 위반 적발		3회 위반 적발		1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현행	개정안
(신설)	다. <u>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u>

III 향후 계획(안)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4. 7월~8월
- 규제·법제 심사 : '24. 8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 '24. 9월
 - ※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 배포 : '24. 9월
-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 '24. 10월

붙임 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 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 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현행 제4조 개정)

- 1) 최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의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외국인학교 확보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교지 및 시설물 확보의 재정적 부담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이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만 한정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규정하도록 함.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려 할 경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새로이 규정하도록 함.

- 3)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부담 완화로 외국인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위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법령 제정 전 설립 후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도 학교 이전 또는 설립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신고 시, 더 유연하게 교지 및 시설물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함.

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현행 별표 개정)

- 1) 가중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 혼란의 여지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 2) 별표(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일반기준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횟수가 1회인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만을 할 수 있다.'를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모집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 함. 또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중처분의 적용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하도록 함.

3) 외국인학교의 반복적인 부정입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들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중등 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일부개정(안)>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입학시킨 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입학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한다. 다만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모집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모집정지 기간은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개시하되,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기간 중에 다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모집정지 기간은 이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에 따른 모집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2. 개별기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처분기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u>지방자치단체</u>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1. ~ 3. (생략)	제4조(설립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외국정부-----.</u>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국제화담당관	
연 락 처	044-203-6769